

# ◎ 國政調查·監査

° 現行: §97

第 97 條 國會는 特定한  
國政事案에 관하여 調  
査할 수 있으며, 그에  
직접 관련된 書類의  
提出, 證人의 출석과 證  
言이나 의견의 陳述을  
要求할 수 있다. 다만,  
裁判과 進行中인 犯罪  
搜查·訴追에 간섭할 수  
없다.

° 改正案: §60

第 60 條 ①國會는 國政을 監  
査하며, 이에 필요한 書類의  
提出, 證人의 出席과 證言이  
나 意見의 陳述을 要求할

수 있다. 다만, 裁判과 進  
行中인 犯罪搜查·訴追에 간섭  
할 수 없다. 事項은 法律로  
②國政監査의 對象·範圍·節次  
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 
정한다.

° 民主案: §62

第 62 條 國會는 國政을 監査  
또는 調査하며 이에 必要한  
書類의 提出, 證人의 出席과  
證言이나 意見의 陳述을 要  
求할 수 있다.

- 法理的으로 볼 때 國會에 의한 對行政府 定例監査는 權力 分立의 원칙에 크게 違背(裁判중인 사건에 대한 監査許容은 對 司法府 관계에서 裁判의 獨立 침해)
- 실제 運營面에서 볼 때 行政의 專門性 深化로 監査의 实效性 기대 곤란, 과거에 있었던 非理 再發 우려
- 外國에서도 國政監査權을 인정한 事例는 全無

- 그러나 國會機能活性化를 위하여 國政監査權의 認定 하되, 그 對象·範圍·절차 등은 法律로 정하도록 함

- 또한 改正黨案이 但書勅諭은 司法權 獨立과 刑罰法의 公正性 유지를 위하여 불가결한 契機으로 이를 削除할 경우 三權分立의 原則에 어긋나 國政監査權 내지 調查權의 行使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削除는 不可 (美國·日本 등은 憲法解釋上 原則으로 確立)

- 元老院案은 國政監査權과 國政調查權 兩者를 모두 包含하고 있으나 不當함. 연속적으로는 同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, 國政調查權은 國會의 固有權敍인 立法權, 預算審計權 등을 배 사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補助的權敍이므로 憲法相違는 有無에 관계 없이 인정되는 것임.